

신용거래설명서 신구조문대비표(2023.09.27 개정)

구분	현 재	개정(안)	비고
□ 신용 거래의 구조	2) 신용거래 개시 회사는 신용용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2) 신용거래 개시 회사는 신용용자를 함에 있어서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합니다. 단, 담보증권이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조치, 불공정거래의 우려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전에 홈페이지에 안내한 종목 등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담보제외 기준 추가
□ 신용 거래의 구조	2) 신용거래 개시 ② 하단 〈신설〉	2) 신용거래 개시 ② 하단 ▪ 고객 담보증권 중 E, F 종목군의 담보평가금액의 합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변경 담보유지비율을 알림톡,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고객 통지 후 적용합니다.	담보유지 비율 적용기준 추가
□ 신용 거래의 구조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 신용용자이자율 *기간별 차등적용(연 5.9% ~ 9.5%, 2023. 08. 30 기준)	※ 신용공여유형별 주요내용 신용용자이자율 *기간별 차등적용(연 5.9% ~ 9.5%, 2023. 09. 27 기준)	날짜 변경

□ 신용 거래의 구조	<p>4) 주문 및 상환 다) 상환에 대한 세부적용 사항 ③</p> <p>회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일(만기일) 다음영업일에 고객계좌에 현금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채무변제가 자동으로 충당합니다. (단, 매도결제대금에 의한 자동상환은 상환취소가 불가능합니다.)</p>	<p>4) 주문 및 상환 다) 상환에 대한 세부적용 사항 ③</p> <p>회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및 정규장, 시간외거래시장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기일(만기일) 다음영업일에 고객계좌에 현금이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경우에는 현금으로 채무변제가 자동으로 충당합니다. (단, 매도결제대금에 의한 자동상환은 상환취소가 불가능합니다.)</p>	<p>임의상환 시간변경</p>
-------------------	---	---	----------------------